

수원지방법원 2022. 9. 7 선고 2021가합2145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동 담당변호사 조영준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2. 8. 10.

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 체결된 증여계약을 379,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별지2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635,330,000원의 전자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는 위 각 어음의 최종소지인이 되었으나 위 각 어음은 2019. 11. 27. 무거래로 모두 지급거절되었다.

나. C은 2019. 12. 2. 배우자인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한 후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20. 5. 4. 주식회사 D 및 주식회사 E(각 1/2 지분)에 이 사건 부동산을 6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C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한 때인 2019. 12. 2. 이 사건 부동산에는 중소기업은행이 근저당권자이고,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330,000,000원이었고, 위 근저당권은 2020. 6. 3. 말소되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 체결일인 2019. 12. 2.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680,000,000원이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5. 20. 기준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709,000,000원이다.

마. 한편, C은 위 어음이 부도 처리되기 전에 자신 소유의 인천광역시 남동구 F아파트 G호에 대하여 H에게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11. 13. 접수 제435427호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가, 같은 등기국 2019. 12. 2. 접수 제471739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위 H은 2019. 12. 2. 피고에게 같은 등기국 2019. 12. 2. 접수 제471740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에 원고는 H 및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66667호로 위 F 아파트에 관하여 C과 H 사이의 2019. 11.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9. 11. 13. 접수 제435427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같은날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국 2019. 12. 2. 접수 제471739호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그리고 위 H이 피고에게 2019. 12. 2.자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국 접수 제471740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위 사해행위들을 각 취소하고 위 가등기 및 각 소유권 이전등기를 각 말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20. 10. 16.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2020. 11. 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BK 기업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회신 결과,

감정인 I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가 C에 대하여 어음금 채권 합계 635,330,000원을 가지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어음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피고 C의 채무초과 상태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C이 발행한 어음이 무거래로 모두 지급거절되었고, 그 무렵 자신이 소유한 F 아파트를 H에게 매도하였다가,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은 사실, 위 법원 판결당시 2019. 11.경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판단을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2019. 12. 2.에 이루어졌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증여계약 체결 당시에도 C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C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줌으로써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방법

1) 사해행위의 취소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으로서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다66416 판결 참조).

사해행위인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채권최고액 396,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변제에 의하여 위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고, 위 부동산의 가액에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과 이 사건 변론종결시의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다.

3) 배상할 가액의 범위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5. 20.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709,000,000원인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330,000,000원인 사실,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은 635,33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부동산 가액에서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은 379,000,000원(= 709,000,000원 - 330,000,000원)이고, 이는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액보다 적은 액수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배상할 가액은 379,000,000원이다.

마. 소결

그렇다면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379,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주옥, 판사 박소정, 판사 김성기

별지1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제3층 호 307.55㎡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대 4921.7㎡

대지권의 종류 : 소 유 권

대지권의 비율 : 4921.7분의 49.75 골.

별지2

전자어음 목록

	어음번호 어음금액	발행인	제1배서인	제2배서인	발행일 만기일	지급은행	무도일
1	58,540,000		(주)		2019.10.24 2019.2.3.		2019.11.27
2	36,940,000		*		2019.10.28. 2020.2.10.	*	2019.11.27
3	27,850,000		*		2019.7.8. 2019.11.28.	*	2019.11.27
4	33,000,000		*		2019.7.25. 2019.12.20.	*	2019.11.27
5	35,000,000		*		2019.10.4. 2020.1.10.	*	2019.11.27
6	66,500,000		*		2019.10.4. 2020.1.10.	*	2019.11.27
7	58,000,000		*		2019.10.16. 2020.1.18.	*	2019.11.27
8	53,000,000		*		2019.10.16. 2020.1.18.	*	2019.11.27
9	62,000,000		*		2019.10.23. 2020.1.21.	*	2019.11.27
10	30,000,000		*		2019.10.23. 2020.1.21.	*	2019.11.27
11	60,000,000		*		2019.10.28. 2020.2.10.	*	2019.11.27
12	24,000,000		*		2019.9.16. 2020.2.18.	*	2019.11.27
13	15,000,000		*		2019.11.13. 2020.2.20.	*	2019.11.27
14	14,500,000		*		2019.11.13. 2020.2.20.	*	2019.11.27
15	61,000,000		*		2019.9.30. 2020.2.25.	*	2019.11.27
어음금 합계		635,330,000					

